□ 산중총회법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 (구성원)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려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된다. 1.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2.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으로 당해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한 자 3.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4.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니. 다만 비구니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수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정덕 이상의 당해 재적 비구니 중 법계, 승랍, 연령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. 5.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, 산중총회 개회일 전 4년 이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가.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자 나. 당해 교구 대중명부에 등재되고, 관할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	제6조 (구성원) ① 현행과 같음.
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려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. 1.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되지 아니한 자 2. 공권정지의 징계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변상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3. 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	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려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. 1 ~ 10 현행과 같음.

현행	개정안
4. 삭제 5. 삭제 6. 삭제 7. 다른 교구의 방장 또는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참여한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. 다른 교구의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. 교구본사를 이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. 삭제 〈신설〉 11. 기타 종법에 의하여 선거권이 제한된 자	 11. 타 교구 재적승으로서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신규로 임명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. 기타 종법에 의하여 선거권이 제한된 자
〈신설〉	부칙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